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

□개 요

- 동 시유재산변경계획안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1.6.9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2호로 2001.6.12 우리 위원회에 회부
- 동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토지 3필지 8,357.8㎡(2,532.66평) 과 건물 557.0㎡(168.78평) 등 총 3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중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업체의 차고지로 임대코자 하는 것임.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동 계획안의 제출시기와 소요예산에 대한 의견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의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계획안이 수립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또 다시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소요예산은 128억 2천 4백만원이 예상되나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매입할 것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는 추경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둘째,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제2기 지하철의 완전개통 등 버스이용 승객의 절대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따라서 서비스 또한 버스 승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버스 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경영 부실로 인한 서비스 불량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철과의 연계노선 등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개편의 기반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계획안은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동 계획안보다 더 절박하고 어려운 업체는 없는 것인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이 수립되었는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예상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돌아가 불평불만 등 원성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

2001년 예산에 편성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2,508억원을 '00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